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의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일 기준

목적

이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의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임시 지침("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임시 코로나 19 지침")은 관객을 포함한 현장 공연 예술 및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객석(FOH), 후방(BOH) 담당자, 공연자/연기자, 계약자, 하청업자, 고객을 포함한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제작소의 소유주/운영자와 그 고용인에게 코로나 19의 확산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는 실시간으로 관객 앞에서 공연되는 음악, 무용, 오페라, 연극, 코미디 및 기타 극장 또는 음성 및/또는 시각 예술(예: 연극, 뮤지컬, 콘서트, 강연, 스피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장 공연 및 실시간 엔터테인먼트의 준비, 제작, 연습, 발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지침은 특히 모든 발권 및 미발권, 공연장 내 착석 및 스탠딩 관객, 실내 수용 인원 1,500명 초과 및/또는 야외 수용 인원 2,500명 초과인 공공장소나 비공개 현장에서의 공연 및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적용됩니다. 1,500명 미만의 수용 인원을 가진 실내 시설 및 2,500명 미만의 수용 인원을 가진 야외 시설에서 개최되는 공연 및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행사는 반드시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소 규모의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위한 임시 지침"에 서술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부터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 시설이 본 지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실내 시설은 정원의 10% 수용으로 재개될 수 있으며 야외 시설은 직원, 연기자 및 공연자, 계약자 및 하청업체를 제외한 정원의 20% 수용으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관객이 입장 전 최근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완전한 예방 접종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면 가리개는 모든 관객에게 필수이며, 이 지침에 포함된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본 지침에 따라 실내 또는 야외 수용 인원이 10,000명 이상인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제한된 수의 관객이 참석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참석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개최하기 전 해당 시설은 검사/예방 접종/건강 검진, 사회적 거리두기, 안면 가리개, 이동 통제, 손 위생, 청소 및 소독,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본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또는 자원을 포함하는 시설 및 행사 계획서를 DOH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및 행사 계획서를 접수한 후, DOH는 관객이 참석하는 공연 전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현장 또는 원격 시설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소 및 행사 계획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를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은 행사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에 DOH에 각 행사에 대한 행사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책임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2) 행사 이름, (3) 행사 주소, (4) 행사 날짜 및 시간, (5) 행사 예상 진행 기간, (6) 관객의 예상 참석 인원수, (7) 시설 직원,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예상 행사 직원 또는 스태프 수.

실내 수용 인원 1,500~9,999 명 또는 야외 수용 인원 2,500~9,999 명의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제한된 수의 관객이 참석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참석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시설은 검사/예방 접종/건강 검진, 사회적 거리두기, 안면 가리개, 이동 통제, 손 위생, 청소 및 소독,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본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또는 자원을 포함하는 시설 및 행사 계획서를 각 카운티 보건부 또는 지역 공중 보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및 행사 계획서를 접수한 후 지역 보건 관계자는 관객이 참석하는 공연 전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시설에 대한 현장 또는 원격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및 행사 계획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를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은 행사 날짜로부터 최소 5 일 전에 지역 보건 당국에 각 행사에 대한 행사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책임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2) 행사 이름, (3) 행사 주소, (4) 행사 날짜 및 시간, (5) 행사 예상 진행 기간, (6) 관객의 예상 참석 인원수, (7) 시설 직원,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예상 행사 직원 또는 스태프 수.

본 지침이 발표될 때 스탠딩 관객이 있는 실내 공연은 아래 섹션 I. "사람", 하위 섹션 C. "운영 활동"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한적인 예외 사항과 함께 금지됩니다. 유연한 좌석제 또는 좌석이 없는 실내 시설(예: 음악 시설 또는 클럽)의 경우, 스탠딩 관중의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관객에게 좌석을 제공하고, 공연 또는 행사 중 대부분의 시간에 관객이 앉아 있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 문서에서 서술된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시설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시설의 소유자/운영자는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산업별 DOH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 기반 업무는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사무실 기반 업무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사(예: 임시 무대)는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공사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onstruction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연기자/공연자를 위한 현장에서의 모든 미용, 메이크업 또는 코스메틱 활동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미용실 및 이발소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Hair Salons and Barbershop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및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ersonal Care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각각 따르며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 외에도, 모든 미디어 제작 활동(예: 방송, 녹화)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미디어 제작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Media Produc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의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단, 실시간 관객(예: TV로 방송되거나 촬영된 스튜디오 관객)이 이 문서에서 언급 및 요구되는 수용 인원, 검사/예방 접종/건강 검진, 사회적 거리두기, 안면 가리개, 이동 통제, 손 위생, 청소 및 소독, 커뮤니케이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매점 혹은 기념품점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필수 및 2 단계 소매 사업체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and Phase II Retail Business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식당, 바 및/또는 매점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식품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뉴욕시 실내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New York City Indo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단 이 지침이 더 엄격한 식품 서비스 기준에 명확히 적용되는 어느 경우든지,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이나 시설에 관객을 이끌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성향을 띠는 부수적인 비발권 공연(예: 전시, 음악 반주를 포함한 식사)은 일반적으로 별도 지침(예: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식품 서비스)을 따라야 하나 그 활동 및 운영에서 본 지침이 해당하는 영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 외에도, 부수적인 비발권 야외 "팝업" 공연 또는 전시의 경우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Low-Risk Outdoor Arts and Entertainment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및 종료 시 공연 현장 내 지정된 구역에 관객을 이끌어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청중이 붐비거나 사회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집단을 형성할 위험성을 가지는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 그 외 모든 부수적인 비발권 공연(예: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는 솔로 가수, 밴드 또는 기타 공연자)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소 규모의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Small and Medium Scale Performing Arts and Entertainment Venu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영화관, 박물관 및 수족관이나 식물원 및 동물원에 국한되지 않으나 이를 포함하는 기타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화관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영화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Movie Theater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뉴욕시 외부 지역의 박물관, 수족관, 미술관 및 기타 저위험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저위험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뉴욕시 내에 위치한 이러한 시설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뉴욕시의 저위험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Low-Risk Indoor Arts and Entertainment in New York City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Low-Risk Outdoor Arts and Entertainment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이며, 모든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또는 제작의 소유자/운영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발표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는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대규모 행사 및 모임 조직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Organizing Large Events and Gatherings) 등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관련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이러한 요건의 최신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제작 및/또는 모든 현장 안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주정부 재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공포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이후 뉴욕주는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경제 재개 전략을 개발 및 배포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공중 보건을 보호하면서 활동과 운영을 안전하게 재개하거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제작은 깨끗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더하여 DOH가 발행한 지침과 명령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제작에 대한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정부 표준 및 해당 최소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규모 공연 예술 또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나 공연 예술 또는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CDC,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지침에 포함된 뉴욕주 기준은 뉴욕주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대규모 공연 예술 또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활동 및 제작과 더불어 관객이 붐비거나 모일 위험성을 가지는 부수적인 비발권 공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리고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제작에 따른 모든 활동의 경우, 시설 또는 제작의 소유주/운영자나 시설 또는 제작의 소유주/운영자에 의해 지정된 또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객이 붐비거나 모일 위험성을 가지는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부수적인 비발권 공연의 경우, 행사 허가를 신청하거나 공연을 제작하는 당사자("책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제작이 특정 공연 또는 행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제작은 이 지침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그 책임의 분배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제작에 제작 인력(예: 프로듀서, 감독, 지휘자, 안무가), 객석(FOH) 인력(예: 지배인, 보안 요원, 티켓 검수원, 좌석 안내원), 후방(BOH) 인력(예: 무대 감독, 무대 담당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담당자, 기술자), 계약자, 하청업체 등의 다양한 개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문서는 공연 또는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행사의 필요에 따라 고용 또는 계약된 "직원" 또는 "행사 인력"을 의미하며 이 지침 내 따로 언급된 공연자/연기자 및 관객은 제외합니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실내 시설의 경우: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실내 시설의 공연 또는 행사에 참석하며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를 제외한 총 관객 수를 수용 인원 증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정 좌석제 시설의 경우 최대 착석 인원의 10% 이하로 제한하거나, 유연 좌석제 시설의 경우에는 최대 수용 인원의 1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 아래 섹션 III에 서술된 바와 같이 참석한 모든 관객은 최근 일자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백신 접종 완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하위 섹션 A "선별 및 검사", 공연 또는 행사에 참석한 관객이 주의 최대 사회 모임 제한 인원수인 실내 기준 관객 100명(2021년 4월 2일 현재)을 초과하는 경우.
 - 관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좌석 또는 유연 좌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객이 관람하도록 지정된 충분한 공간을 갖춘 실내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공연 또는 행사의 수용 인원을 관객이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의 최대 수용 인원의 10% 이하(예: 관객당 약 100 제곱피트 또는 4인 관객당 250 제곱피트)로 제한해야 합니다. 모든 관객은 최근 일자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예방 접종 완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야외 시설의 경우:

-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야외 시설"은 공연 예술 및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행사(예: 보조 시설을 갖춘 개방형 극장, 고정 좌석 반원형 계단 관람석, 유연 좌석 반원형 계단 관람석, 대형 공연장, 음악당, 그랜드스탠드)를 관람하도록 설계 또는 사용되는 개방된 공간으로, 임시 또는 고정 커버(예: 가리개, 지붕)를 포함하며 덮개의 최소 두 면이 공기 흐름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공기 흐름을 위해 열려 있는 면의 경우, 공연 또는 행사가 진행되거나 관객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개방된 영역의 최소 50%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야외로 연결되며 폐쇄되는 고정문은 공기 흐름을 위해 열린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인접한 덮개로 서로 마주 보는 개방 면이 있는 경우, 이러한 덮개는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야외 시설의 공연 또는 행사에 참석하며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를 제외한 총 관객 수를 수용 인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정 좌석제 시설의 경우 최대 착석 인원의 20% 이하로 제한하거나, 유연 좌석제 시설의 경우에는 최대 수용 인원의 2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 공연 또는 행사에 참석한 관객이 주의 최대 사회 모임 제한 인원수인 야외 기준 관객 200명(2021년 4월 2일 현재)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관객은 최근 일자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예방 접종 완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좌석 또는 유연 좌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객이 관람하도록 지정된 충분한 공간을 갖춘 야외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공연 또는 행사의 수용 인원을 관객이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최대 수용 인원의 20% 이하(예: 관객당 약 100 제곱피트 또는 4인 관객당 250 제곱피트)로 제한해야 합니다. 모든 관객은 최근 일자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예방 접종 완료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같은 일행/가구원/가족에 속하지 않은 고객 사이에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 또는 행사 전체나 일부에서 관객이 일어설 것으로 책임 당사자가 기대하는 경우, 같은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관객 사이 6 피트 이상(예: 8~9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 관객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한 경우에만 시설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개인이 만 2세 이상이며 안면 가리개 착용을 의학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각 개인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도록 지정된 좌석/구역에 앉았을 때만 일시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리허설 및 무대 위 상호 작용이나 헤어, 메이크업, 의상과 같은 핵심 활동에 방해될 수 있는 경우, 공연자/연기자는 일시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벗을 수 있습니다. 공연자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안면 가리개를 써야 합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소재 안면 가리개,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안면 가리개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N95 마스크 또는 기존 산업 기준에 맞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OSHA 지침을 따릅니다.
- 안면 가리개 요건은 해당되는 경우 연방 장애인법 및 뉴욕주 및 시 인권법(City Human Rights Law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안전 또는 핵심 활동으로 더 가까운 거리가 요구되지 않는 한, 행사 및 제작 현장(예: 공용 공간, 대기 장소, 장비 영역)에서 항상 모든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 사이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단, 핵심 활동 및 기능(예: 이동, 의상, 헤어, 메이크업, 공연)에 의해 직원 및/또는 공연자/연기자의 6 피트 거리 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이러한 활동과 기능을 식별하고 이에 관련된 개인들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예: 물리적 장벽, 안면 가리개 또는 기타 PPE, 시간 단축, 공기 환기/여과)을 시행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공연자/연기자는 공연하는 동안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이용하여 다른 공연자/연기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예: 노래) 중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관악기, 브라스 또는 기타 호흡 기반의 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자/연기자는 12 피트 거리 또는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통해 다른 공연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서로 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예: 밴드 멤버, 오케스트라, 합창단, 해설자).
 -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공연자/연기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가까이 있는 모든 직원 및 행사 인력(예: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담당자, 음향 기술자)이 근접 활동이 필요한 시간 동안 얼굴 가리개 또는 보안경(예: 고글) 등의 허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 및 추가 PPE 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및 행사 인력은 장갑을 착용하거나 이러한 활동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연자/연기자 및 모든 관객 사이에 최소 12 피트 거리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현장 규모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대 앞 2~3 열을 공석으로 남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관객 및 직원이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일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직원과 관객 사이 항상 서로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단, 안전 또는 핵심 활동에 더욱더 가까운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좌석 안내원, 보안)는 제외합니다.
 - 직원과 관객 간 빈번하게 상호 작용이 일어나며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관객 간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예: 매표소, 등록기, 매점, 검표소).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물리적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큐비클,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의 구성원인 개인을 제외한 관객들 사이에서 최소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다른 일행/가구원/가족의 구성원으로부터 6 피트 이상(예: 8~9 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6 피트 이상 거리두기 요건은 책임 당사자가 장소 전체에서 더욱 통제된 이동을 보장하고 본 지침의 준수 및 시행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일 수 있는 구역(예: 주차 구역, 대기 줄/구역, 진입/출구 지점, 로비, 라운지, 전망 구역)에서 같은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관객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관객 간 주차, 진입, 입장, 경기 중 중간 휴식/휴게 시간, 퇴장 중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별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예: 충분한 수의 출입구 개방, 교통을 정리하는 안내원 배치, 시간이 정해진 입장 및/또는 지정된 출입구 사용, 주차 공간을 개조하여 차량 사이에 추가 공간 제공).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관객 사이의 불필요한 물리적 접촉을 전부 금지해야 합니다.
- 착석 관객을 동반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 책임 당사자는 관객들이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에 속하지 않는 관객으로부터 최소 6 피트 거리 떨어진 곳에 착석할 수 있도록 청중 좌석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계획에서는 일행/가구원/가족 사이에 6 피트 이상의 추가적 거리(예: 8~9 피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의 좌석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수용 인원 및 거리두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입장 전 반드시 예약을 요구하거나 관객에게 좌석을 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소의 원래 배치가 좌석 간 6 피트 거리두기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고객 그룹들이 같은 줄에서 최소 두 개 좌석을 떨어져 앉도록 좌석 배치를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의 원래 배치가 줄 간 6 피트 거리두기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예: 이동식 의자, 대형 리클라이너), 기존 좌석 배치에서 한 줄을 비워 두고 앉도록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구내매점 또는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 또는 픽업하거나, 현장에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사가 시작되면 관객이 착석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관객이 공용 공간에서 배회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개인이 자신의 좌석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구내매점 또는 소매점에 방문할 때 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각 열에 착석한 그룹의 인원수를 최소화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연자/연기자가 관객석에서 12 피트 거리에 위치하게 하거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통해 무대 또는 공연 영역과 관객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 구성원이 함께 앉고 다른 관객 일행에게서 적절히 떨어질 수 있도록 좌석을 소그룹이나 "블록"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스위트 또는 박스별 관객 수용 인원 제한(예: 10 인 이하 또는 해당 공간의 최대 수용 인원의 25%)을 두어 다른 일행/가구원/가족의 관객들이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 테이블 세팅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식품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뉴욕시 실내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New York City Indo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서 규정하고 있는 좌석 요건을 따라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을 위한 좌석이 있는 실내 및 야외 식탁이 모든 방향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테이블 간에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테이블 간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리적 장벽의 높이는 5 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비상구 및/또는 화재 비상구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블당 최대 10명 한도로 테이블이 허용하는 한 다수의 개인을 단일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일행의 관객이 같은 대형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공동 테이블의 경우, 일행 사이에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른 일행 사이(예: 단체 관객)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이 설치된 때에만 관객이 바 구역에 앉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뉴욕시 내 시설의 경우 그러한 바 좌석 및 서비스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참석자가 최근 일자의 진단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백신 접종 완료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항상 바 구역 직원 간 서로 및/또는 관객 간에 최소 6 피트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스탠딩 관객을 동반하는 공연의 경우:
 - 책임 당사자는 핵심 활동에 더 가까운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좌석 안내원, 보안) 외에는 항상 모든 직원과 모든 관객 사이 6 피트 이상의 거리(예: 8~9 피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객 스탠딩 배치 계획(예: 계획, 레이아웃)을 수립해야 하며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 소속인 관객은 제외합니다.
 - 발행 시점에서, 스탠딩 관객을 포함하는 실내 공연은 I. "사람" 섹션의 하위 섹션 C. "운영 활동"에 서술된 바와 같이 제한적인 예외 사항 외에는 계속 금지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본 지침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건을 관객이 준수하고 직원 또는 행사 인력이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 시스템은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처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시설로부터 퇴장을 당하기 전 안면 가리개 미착용에 대한 경고 1회 허용).
 - 책임 당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직원 또는 행사 스태프를 배치하여 관객에게 좌석을 안내하거나 이동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관객이 자신의 지정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착석할 수 있도록 공연 또는 행사 전 가능한 한 오래 현장 내 적절한 조명을 켜 둡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 직전이나 직후에 현장 밖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현장 바로 근처에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을 해산하기 위한 안전 관리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 가방 보안 검사나 개인 물품에 대한 기타 보안 검사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가방에 대한 제한(예: 대형 가방 금지)을 시행하거나 깨끗하거나 투명한 가방에 물품을 반입하여 입장 대기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직원 또는 행사 인력이 개인 물품에 자주 접촉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관객에게 대형 소지품을 지참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 관람 구역을 제외한 현장 내 공용 좌석 공간(예: 로비, 라운지)의 폐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이 계속 개방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 당사자는 관객 또는 단체 관객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떨어져 있도록 좌석 배치(예: 벤치, 의자, 테이블, 소파)를 변경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벽, 테이프 또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 등으로 좁은 통로(예: 좌석 줄 사이), 복도, 공간에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예: 로비, 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입장권 스테이션, 매표소, 건강 검진 진료소 등)에서 6 피트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일방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혼잡한 구역(예: 로비의 공용 좌석 구역, 매점 및 상품 판매 구역)에서 개인 간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출입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동량이 많은 모든 공용 구역 전역과 현장 외부 및 내부에 일방통행 표지 및 표지판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엘리베이터, 기계 구역, 제어실, 금전 등록기 후면, 보관실, 음향 부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동시에 착용하거나 제작 또는 공연에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만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최대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창문 및 문 열기).
 -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모임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들이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의 일원이 아닌 한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전후로 청소 및 소독하지 않은 상태의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 착석 공간(예: 박스 오피스, 백스테이지)의 사용을 조절하거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달리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역에 물리적 장벽(예: 플라스틱 차폐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까운 또는 밀접 접촉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특히 유지 보수 및 청소 담당자 등의 직원과 행사 인력을 두 사람으로 고정된 짝 또는 소그룹(예: 집단)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내에서 전용 작업 영역의 사용을 고려하고 동시에 동일한 작업 공간 내 이용 부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역 식별 및 직원과 공연자/연기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컬러 코드 시스템 또는 기타 시각적 표식은 수용 인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곳곳에 **DOH 코로나 19 표지**와 일치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가 보건부의 표지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근무지 또는 장소에 따라 자체적으로 맞춤형 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사람들에게 다음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항상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하며, 먹거나 마시는 때는 제외합니다.
 - **DOH 여행 정보** 요구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안면 가리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이 코로나 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라야 합니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해당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연 및 대면 제작 활동 외의 직원 또는 공연자/연기자의 대면 모임(예: 리허설, 캐스팅/오디션, 직원 회의)을 제한하고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이나 화상 회의 등 다른 방법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상 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선호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를 위한 거리두기 프로토콜이라 할지라도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모임 또는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 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거나 개인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원격 또는 가상 캐스팅 및 오디션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대면 공연의 경우:
 - 책임 당사자는 공유하는 표면 및 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약속 사이에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캐스팅 장소에 도착한 출연자가 오디션 시점까지 개인 차량 또는 시설 또는 현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오디션 중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디션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 지침의 조항에 따라 항상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 및 공용 구역을 폐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휴게실, 스낵 바) 근처에서 손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소 등 좁은 공간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신호 및 체계(예: 사용 중 표시)를 설치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육실에 대한 모범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 6 피트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화장실과 세면대 사이에 물리적 장벽 설치(예: 하나씩 띄워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칸막이 화장실이나 세면대 폐쇄)
 - 비접촉식 비누 디스펜서 사용
 - 공기 건조 장치 대신 비접촉식 종이 타월 디스펜서 사용, 및
 - 화장실의 수용 인원 제한과 대기 중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표지판 설치.
- 책임 당사자는 실행 가능 범위에서 모든 모임(예: 쉬는 시간, 식사 및 근무 시작/중지) 시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즉, 6 피트 공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이나 공연 장소의 정찰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상 또는 원격으로 수행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이 현장 또는 공연 장소를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으로 살펴보고, 이 지침의 조항에 따라 모든 직원이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함을 조언하도록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충분한 수용 인원 및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공연 또는 제작 시 동시에 같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직원 및/또는 공연자/연기자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한 차량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탑승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탑승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탑승자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늘리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직원 및/또는 공연자/연기자의 이동을 위해 책임 당사자가 제공하는 차량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사용 전과 운전자 및/또는 탑승자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주 접촉하는 영역(예: 문 손잡이, 팔걸이, 버클, 좌석, 창문, 화면)을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이러한 차량에서 운전자 및 탑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 용품 및/또는 물티슈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개인이 혼자 운전하거나 개인 교통수단을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C. 운영 활동

- 실내 및 야외 수용 인원이 10,000 명 이상인 시설의 책임 당사자는 행사 날짜로부터 최소 5 일 전에 DOH 에 각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한 행사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책임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2) 행사 이름, (3) 행사 주소, (4) 행사 날짜 및 시간, (5) 행사 예상 진행 기간, (6) 관객의 예상 참석 인원수, (7) 시설 직원,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예상 행사 직원 또는 스태프 수. 행사 세부 사항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DOH 에 행사 세부 사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연/행사는 지침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 및/또는 지역 보건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수용 인원 1,500~9,999 명 또는 야외 수용 인원 2,500~9,999 명인 시설의 책임 당사자는 각 공연 또는 행사마다 행사 날짜 최소 5 일 전에 행사 세부 정보를 각 카운티 보건부 또는 지역 공중 보건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세부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책임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2) 행사 이름, (3) 행사 주소, (4) 행사 날짜 및 시간, (5) 행사 예상 진행 기간, (6) 행사 예상 참석 고객 인원수 및 (7) 시설 직원,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예상 행사 직원 또는 스태프 수. 행사 세부 사항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카운티 보건부 또는 지역 공중 보건 당국에 행사 세부 사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연/행사는 지침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 및/또는 지역 보건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내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참석자의 좌석을 배정하고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과 함께 앉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석자는 필요시(예: 입장/퇴장, 화장실, 매점, 소매점) 혹은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서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좌석 설치가 어렵거나 관객에게 좌석을 제공하면 안전 문제(예: 임시 좌석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경사지에 있는 관람 영역)가 생길 수 있는 고유의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
 - DOH 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중소 규모의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Small and Medium Scale Performing Arts and Entertainment Venu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는 솔로 가수, 밴드 또는 공연자 등과 같이 부수적인 비발권 공연의 경우:
 - 책임 당사자는 참석자들이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사람과 6 피트 이상(예: 8~9 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공연자/연기자와 참석자 사이 최소 12 피트의 거리 또는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참석한 스탠딩 관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이 서서 공연을 관람할 때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착석 시 먹거나 마실 때만 일시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준수하고 시설에 도착하거나 떠나는 관객이나 행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타협하며 공공장소를 통과할 수 있도록 6 피트 이상의 공간을 나타내는 적절한 거리두기 표시의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람들의 이동 흐름을 관찰하고 단체가 사회적 모임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직원, 행사 인력, 또는 보안 인력을 유지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및 제작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더 적은 대면 직원 또는 공연자/연기자(예: 백업 댄서, 음악 반주, 해설자 수 제한)가 요구되는 현장 내 초기 제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행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초기 공연 길이의 제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행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현장 전체에서 통제되지 않은 관객의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쉬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큰 목소리로 메아리치게 하기 관악기 연주와 같은 활동이 잠재적으로 호흡기 비말의 생산을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책임 당사자는 현재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고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예: 추가 간격, PPE 또는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이 좌석에 앉아 있도록, 또는 일어나 있는 경우 공연자/연기자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정지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청중 참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출입 시, 화장실, 매점 및/또는 소매점 사용 제외).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코로나 19 안전, 적절한 손 및 호흡기 위생, 청소 및 소독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 간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현장에 상주하는 대면 인원을 참석한 관객과 함께 공연 또는 행사를 제작, 상연, 수용하는 데 필요한 직원으로 제한
 - 교대 근무 설계(예: A/B 팀, 직원을 위한 도착/출발 시차 두기)
 - 예정된 작업 시간에 시차를 두고 사용 중인 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통해 동일한 구역에 복수의 직원 및/또는 팀이 모이는 것 피하기(예: 유지 보수 팀) 및/또는
 - 전화 및 라디오, 무선 마이크, 복사기, 프린터, 등록기와 같은 공유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사용자 간의 공유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하거나 사용자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장려하는 규칙 마련.
- 해당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연/행사의 시차를 두고 공연/행사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출입구에서 혼잡하지 않도록 하고 행사 종료 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청소 및 소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장비 또는 기기(예: 악기, 카메라, 소품, 의상, 단체복, 가발)를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직원, 공연자/연기자에게 온종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때, 책임 당사자는 관객과 공연자/연기자 사이의 모든 직접적, 밀접 접촉 상호 작용(예: 사인)을 금지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연자/연기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연 준비"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도록 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예: 현장 밖에서 또는 원격 지시를 통해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마치기).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일회용 항목을 가능한 한 디지털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예: 스크립트, 악보, 출퇴근 기록, 콜 시트, 브로슈어, 안내문). 디지털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할당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좌석 테이블 간 필수적인 분리 및 관객 당사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장에 있는 모든 식당, 바 및/또는 구내 매점에 대해 DOH의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식품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뉴욕시 실내 식품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New York City Indo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야외 및 실내 음식 서비스 구역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침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관객이 앉아 있는 동안에만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관객 간에 음식/음료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예: 간식을 다른 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 책임 당사자는 관객이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 서비스를 위한 휴식 시간 시차 두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한 지침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셀프서비스 식음료(예: 소스, 탄산음료)를 중단하고 매점에서 직원이 서빙하는 음식 및 음료만 허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음식과 음료가 사전 포장으로 또는 미리 채워진 용기에 담아 제공되도록 하고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개인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한 모든 통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2일 현재 기준, 해당 식음료 서비스는 오후 1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통제된 구역 밖에서 모임을 금지하고 시설 전체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해 공연 또는 행사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현장 공간을 관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보안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D. 이동 및 거래

- 발권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수용 인원 제한을 적절히 관리하고, 개인의 이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입구/출구 근처에서 불필요한 모임을 막기 위해 모든 관객이 입장권 소지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특정 출입구에 지정된 입장 시간을 할당하여 입장 시 모임을 줄여야 하며, 도착하기 전 관객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예: 색상으로 표시된 입장권, 입장권에 정보 인쇄,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정보 전송).

- 책임 당사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입장 및 퇴장 시 시설에 충분한 수의 입구/출구를 열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모든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이동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좌석 안내원, 직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인력이 관객 퇴장 시 가장 가까운 출구로 관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관객 인원수를 허용된 수용 인원으로 제한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직원 또는 행사 인력(예: 안전, 관객 서비스)을 시설에 유지해야 하며,, 관객이 특히 입장 및 퇴장 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참석자 수가 사회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관객 입장 자격 증명(예: 유효한 입장권, 음성 진단 검사 결과 또는 예방 접종 증거)을 검증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입장 시 관객이 모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경계와 입구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의 밀집이나 배회를 반드시 금지하고(예: 로비, 구내 매점에서), 추가 인력을 고용 또는 배치하는 등 이러한 밀집과 배회를 막기 위해 현장에 충분한 직원 및 행사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 작용(예: 교대 근무를 끝내고 떠나는 개인의 출구 및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개인의 입구 별도 지정) 및 이동을 제한(예: 직원은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머물러야 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일방통행의 출구와 입구를 명확하게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하는 경우 건강 검사나 필수 진단 검사 또는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기다릴 때 최소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시각 신호 및/또는 대기열 통제 장치(예: 스탠치온, 라인 거리 마커,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객 대기 구역을 배치하여(예: 대기열, 로비, 주차장 등) 다른 관객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고 구역 내의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개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발권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수용 인원 제한을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해 관객이 입장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로 비접촉 입장권 발권 및 사전 지불 옵션(예: 온라인 포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전 연락, 우편 주문 또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실제 픽업)을 제공해야 하며, 현금, 신용 카드, 보상 카드, 관객의 모바일 기기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경우 비접촉 결제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위의 요건에 따라 고객을 위해 장소의 좌석을 배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관객이 행사 전에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입장권 픽업 및 기타 장소 대기 줄에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 시각 신호(예: 원뿔 표지, 마커, 표지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입장 시 고객과 장소 직원 간의 기기 또는 공유 대상의 취급을 제한해야 합니다(예: 디지털 입장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화기).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현장에서 사전 또는 원격으로 음식 및 음료(예: 전화, 온라인, 앱 또는 기타 디지털 할인 주문)를 주문하도록 권장하고, 전용 픽업 공간에서 품목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한 좌석에서의 서비스 또는 배달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송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현장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머물러 있는 무접촉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 절차 동안 예상 활동에 허용 가능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최소한 안면 가리개 등)를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비/물자/상품을 나르기(예: 배달 운전수로부터) 전후 직원이 손을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물건을 신기 시작 전 손 위생을 수행하고 모든 짐을 실은 후 다시 소독하기).
- 책임 당사자는 일회용 프로그램, 팸플릿, 지도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해당 항목이 사용되는 경우). 또한 시행 가능한 경우 개인용 전자 장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일회용 품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재사용 가능한 물체를 사용 후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물리적 프로그램 및 실제 지도보다 디지털 프로그램 및 지도(예: 휴대 전화로 사용)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없는 공용 좌석 또는 소매 제품 판매 영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II. 장소

A. 공기 처리 및 건물 시스템

실내 공간이 있는 시설:

- 책임 당사자는 중앙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여과가 가능한 경우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소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13 등급 또는 업계 동일 수준 이상(예: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EPA))의 최고 수준의 여과를 만족하도록 하고, 공인 냉난방 공조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기록하고 인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CDC 및 미국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 협회(ASHRAE) 권고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절차 채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특히 공기 처리 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건물).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VGI-C)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위에서 언급한 최소 여과 수준(즉, **MERV 13** 등급 이상)을 처리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인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로 하여금 현재 설치한 필터 랙이 상기 최소 수준의 여과(즉, **MERV 13** 등급 이상)와 호환될 수 없고/없거나 공기 처리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여과(즉, **MERV 13** 등급 이상) 시스템을 설치하면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이전 제공할 수 있었던 최소 수준의 냉난방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 및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포함하여 더 낮은 여과 등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 또는 지역 보건부 공무원이 검토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MERV 13** 등급 이상의 정화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있는 장소의 책임 당사자는 **CDC** 및 **ASHRAE**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또는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VGI-C)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없는 장소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CDC** 및 **ASHRAE**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모든 공간 환기 시스템(예: 창문 시설, 벽면 부품)을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더 긴 시간 동안 모든 공간의 환기 시스템을 가동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신선한 공기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 환기 시스템을 설정하고 송풍기 팬을 저속으로 설정하며, 가능한 한 점유 인원의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해당하는 경우, 모든 천장 팬을 점유 인원으로부터 위쪽으로 공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도록 설정합니다.
 - 가능한 경우 실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의 팬을 우선합니다.
 - 적절한 배기를 제공하지 않고 공기만 순환시키거나 실내로 공기를 불어 넣는 팬의 사용을 피하기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VGI-C)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완전히 폐쇄되었던 장소의 근무자가 장소로 복귀하기 전, 책임 당사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복귀 점검 및 과제,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기계 시스템, 수도 시스템, 엘리베이터 및 HVAC 시스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장비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기계(예: 밸브 및 스위치)가 신중히 관찰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장기간 운영을 하지 않은 후,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려면 특정 시스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중단 기간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각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시스템의 makeup/외부 설계에 따라 최소 24 시간 동안 신선한 공기를 활용해 건물을 환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공기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예: 건물 환기 후).
 - 책임 당사자는 냉각탑의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이 주정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밀폐수 시스템 및/또는 수질이 화학 및 미생물적으로 규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보관하는 모든 장치에서 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건물 물 관리 계획에 따라 냉수 및 온수 시스템을 배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건물 수도 시스템을 재출한 후 필요에 따라 정수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 완전히 폐쇄된 건물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건물을 재개장하기 전에 모든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 상태가 회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 관객이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해당 개인이 만 2세가 넘었고 그러한 안전 가리개 착용을 의학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 행정 명령 202.34 호 확대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안전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 지침에서 달리 허가한 경우(예: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이나 핵심 활동/공연을 수행하고 있는 공연자/연기자로부터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앉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관객)를 제외하고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 관객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시설 내에서 항상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단, 핵심 활동 및 기능(예: 이동, 의상, 헤어, 메이크업, 공연)에 의해 직원 및/또는 공연자/연기자의 6 피트 거리 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이러한 활동과 기능을 식별하고 이에 관련된 개인들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예: 물리적 장벽, 안전 가리개 또는 기타 PPE, 시간 단축, 공기 환기/여과)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안전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공연자/연기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가까이 있는 모든 직원 및 행사 인력(예: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담당자, 음향 기술자)이 근접 활동이 필요한 시간 동안 얼굴 가리개 또는 보안경(예: 고글) 등의 허용할 수 있는 안전 가리개 및 추가 PPE 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및 행사 인력은 장갑을 착용하거나 이러한 활동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공연자/연기자는 공연하는 동안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이용하여 다른 공연자/연기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예: 노래) 중 안전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관악기, 브라스 또는 기타 호흡 기반의 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자/연기자는 12 피트 거리 또는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통해 다른 공연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서로 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예: 밴드 멤버, 오케스트라, 합창단, 해설자).
 - 가능한 경우, 음악가(예: 피아노, 기타, 첼로)는 공연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이 다른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또는 관객과 자주 교류하는 워크스테이션(예: 매표소, 박스오피스, 건강 검진 스테이션)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다면, 실현이 가능한 경우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물리적 장벽(예: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밀집한 공연자/연기자가 요구되는 행사(예: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단, 해설자)에서 물리적 장벽의 설치 또는 기타 거리두기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안면 가리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CDC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일회용 마스크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공연자/연기자에게 안면 가리개가 젖거나 더러워지면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소유의 추가 보호 커버(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업무의 성격상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OSHA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착용, 벗기, 세척(해당되는 경우) 및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건 공유(예: 퇴장 등록기, 티켓 스캐너) 및 난간 또는 터치스크린 등의 공유 표면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는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 관객이 공유 물건 또는 접촉이 잦은 표면에 접촉할 때 장갑(작업용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하거나,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C.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대규모 행사 및 모임 조직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Organizing Large Events and Gatherings), "[코로나 19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와 DOH가 권고하는 위생 및 청소, 소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월.
 - 소독제: 최소 알코올 60%를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손 씻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소에 비치.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시설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합니다(예: 입구, 출구, 엘리베이터, 로비, 보안/리셉션 데스크 등). 가능한 경우 자동 손 소독제 분사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 장소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장소 주변에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자주 만지는 물건과 표면(예: 입장권 스캐너, 등록기, 마이크, 라디오,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에 사용하기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하고 직원 및 행사 인력에게 해당 물건과 표면 사용 전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용품을 사용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공연/행사 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시설에서 공연/행사가 있을 때 최소 하루에 두 번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공연 또는 행사 후 공연자/연기자 및 직원 영역(예: 탈의실, 로커룸)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워크스테이션(예: 입장 데스크)이 서로 다른 직원이 사용할 때 사이에 청소 및 소독되도록 해야 합니다.
- 통행량이 많은 구역 및 접촉이 잦은 표면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객이 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사용하는 장비와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코로나 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등록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통신용 개인 장치(예: 무전기, 라디오, 마이크)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배포하기 전에 그리고 반납하기 전에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상품을 세척 또는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비, 도구 또는 재료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간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과 일회용 장갑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장비와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공연자/연기자를 위해 공연 또는 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의상, 단체복, 악기, 음악 장비, 가발, 소품, 마이크 및 기타 필수 항목의 공유를 막거나 최소 각 개인의 사용 전후에 세척 및 소독하도록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소품, 의상 및 세트 자재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 이후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용 이후 의상을 모아 세탁하거나 세척 및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깨끗한 의상은 개별 가방에 밀봉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세탁 사이에 사용한 의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출연자에게 세탁 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리넨을 수집하고 세탁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다루지 않도록 공연자/연기자가 지정된 통에 사용한 리넨을 두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사용되거나 더러운 수건, 리넨 및 기타 세탁물을 다루는 직원은 다음의 **CDC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러운 세탁물을 흔들지 말고, 세탁물 및 바구니를 다룰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품목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사용 후 바구니를 세척 및 소독하고, 세탁물을 다루고 장갑을 벗고 버린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이 최소 60%인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간 또는 시설 내에서 코로나 19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출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청소 및 소독 시 최소한 모든 통행량이 많은 주변 구역 및 접촉이 잦은 표면(예: 좌석, 키오스크, 엘리베이터, 무대, 공유 물품, 화장실, 손잡이, 문 손잡이)을 포함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CDC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기다리십시오. 24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하지 않은 직원 및/또는 공연자/방문자는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공연 또는 행사 이후 가능한 한 모든 좌석(예: 의자, 팔걸이)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공유 물체(예: 지불 장치, 금전 등록기, 티켓 키오스크), 구역 및/또는 표면(예: 문)의 취급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물체 및 구역을 최소한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일행/가구원/가족이 아닌 공연자/연기자 및 직원 간 개인 물품(예: 물병, 장비, 수건, 세면도구, 의상) 및 음식/음료의 공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전체의 교차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의 특정 구역(예: FOH, BOH, 탈의실, 로커룸)에 청소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 모임 또는 여러 접점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공용 비품 또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폐쇄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예: 요청 시 개별 배포를 위한 홍보 브로슈어 스탠드).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 간 음식 및 음료 공유(예: 셀프서비스 식사 및 음료)를 금지하고,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셀프서비스가 아니며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공용 물체(예: 숟가락, 집게)를 만지지 않도록 충분히 직원을 갖추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경우 뷔페를 통해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간의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 포장된 용기에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일회용 또는 개별적으로 포장된 식사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D.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공연/행사 및 현장 활동을 정상 수준으로 재개하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용권 취소 및 환불 정책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여 아픈 고객이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십시오.

E.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 관객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 교육, 표지판 및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개인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CDC 및 DOH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개인에게 상기시키도록 장소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에서 시행 중인 안전 및 건강 절차 개요를 설명하는 행사 전 알립 등 안전/건강 예방 조치에 관한 명확한 문서를 관객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III. 절차

A. 선별 검진 및 검사

- 모든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만 2 세 이상의 대중 대면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 공연자/연기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원이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또는 DOH 에서 허가한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 또는 공연/행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수집된 표본(예: 면봉)에서 수행된 비교 가능한 분석 민감도의 기타 핵산 증폭 검사(NAAT)를 사용하여 코로나 19 음성 진단 검사 결과를 얻었음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공연/행사 시작 시간 6 시간 이내에 수집된 표본에 대해 수행된 FDA 공인 항원 검사로부터의 코로나 19 음성 검사 결과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하는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는 공연/행사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한 즉시 음성 진단 검사 결과(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면 양식)에 대한 증거를 지정된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검사 요건의 대안으로,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는 공연/행사 날짜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OH 와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가 잠재적 코로나 19 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진단 검사를 권장하며 책임 당사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DOH 는 CDC 와 협의하여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지침을 수정할 것입니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는 첫 번째 공연/행사 전에 진단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를 검사 w 해야 하며, 그 후 시설의 공연/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 매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해당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공연/행사 최소 14 일 전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참석자의 수가 사회적 모임 제한(예: 실내 100 명 또는 야외 200 명)을 초과하는 공연과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만 2 세 이상의 모든 관객이 FDA 또는 DOH 에서 허가한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 또는 공연/행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수집된 표본(예: 면봉)에서 수행된 비교 가능한 분석 민감도의 기타 핵산 증폭 검사(NAAT)를 사용하여 코로나 19 음성 진단 검사 결과를 얻었음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공연/행사 시작 시간 6 시간 이내에 수집된 표본에 대해 수행된 FDA 공인 항원 검사로부터의 코로나 19 음성 검사 결과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관객은 공연/행사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한 즉시 음성 진단 검사 결과(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면 양식)에 대한 증거를 지정된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검사 요건의 대안으로, 관객은 공연/행사 날짜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OH 와 CDC 가 잠재적 코로나 19 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여전히 진단 검사가 권장되며 책임 당사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DOH 는 CDC 와 협의하여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지침을 수정할 것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공연/행사로부터 6 시간 이내에 수집된 표본의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해 FDA 공인 항원 검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항원 검사는 DOH의 전자 임상 실험 보고 시스템(ECLRS)에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전부 보고하는 등 DOH에서 제시한 모든 요건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PCR, NAAT 또는 항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재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은 코로나 19 증상을 관찰하고, 공공장소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장기간, 낯선 사람과의 접촉 및 대규모 모임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만 2 세 이상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진단 검사 음성 결과 또는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중을 직접 대면하는 모든 직원, 공연자/연기자, 공연자/연기자와 밀접한 접촉이 수반되는 업무를 맡은 직원 또는 관객(실내 100 인 초과, 야외 200 인 초과인 행사)의 현장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에 대한 양성 진단 검사 결과를 받은 모든 공연자/연기자 또는 직원은 적절한 보건 당국과 상담하고 업무 복귀 허가를 받을 때까지 공연/행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지난 10 일 이내에 양성 판정을 받은 관객들과 긴밀히 접촉한 관객의 모든 구성원(예: 가족 구성원, 같은 거주지를 공유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에 대한 양성 진단 검사 결과를 받은 모든 관객에 대해 공연/행사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리허설 및 공연/행사를 포함하여 모든 대면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의무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별 검사는 권장 사항이지만 배달 직원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발권 행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관객을 대상으로 시설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하는 즉시 의무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선별 검사는 가능한 한 현장에 개인이 현장에 보고하기 전 또는 입장하기 전에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 이메일, 전화, 전자 조사, 티켓 구매 시, 표지판을 통해).
 - 선별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개인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 검사를 조정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의 일환으로 책임 당사자는 비접촉 온도계 또는 열 감지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든 발권 관객,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에 대해 체온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100.4°F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 모든 개인과 지난 10 일 이내 발열 증상이 있는 관객들과 긴밀한 접촉을 한 개인(예: 가족 구성원, 같은 거주지를 공유하는 개인)의 공연/행사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첫 번째 체온 검사에서 100.4°F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 관객이 임시로 검사선을 벗어나서 체온이 정상화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린 다음 두 번째 체온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가 첫 번째 검사의 결과를 확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검사가 100.4°F 이상의 체온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관객은 공연/행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체온 측정은 반드시 온도 검사는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U.S. Equal Opportunity Employment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개인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검사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선별 검사에서는 개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하는 설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증상: 현재 코로나 19 증상을 경험하고 있거나 최근에(지난 48 시간 이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CDC는 코로나 19 증상으로 발열이나 오한, 기침, 숨참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의 새로운 상실, 인후염, 코 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 중 일부는 알레르기나 편두통과 같은 의사가 진단한 기존의 의학적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상이 새롭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만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연락처: 진단 검사에 의해 확진되거나 증상에 근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지난 10 일 동안 밀접한 접촉(또는 보건 당국에서 판단한 근접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 DOH는 밀접 접촉이란 증상이 나타나기 2 일 전부터 또는 무증상인 경우 검사 2 일 전부터 24 시간 이내에 10 분 이상 개인의 6 피트 이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함을 발표했습니다. (밀접 접촉은 적절한 필수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한 상태에서 건강 관리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예외 사항 (1) 백신 시리즈 완료 후 14 일 이내로 정의된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지난 90 일 이내 완전히 받았거나 (2) 지난 3 개월 이내 실험실에서 확인된 코로나 19 확진 사례에서 완전히 회복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접촉 후 격리 대신에, 해당 개인은 노출 후 14 일 동안 코로나 19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지난 10 일 동안 진단 검사 결과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또는
- 최근 여행: 코로나 19 확산이 되지 않은 주, 미국 영토 또는 CDC 수준 2 이상 여행 정보 국가로부터 지난 10 일 내 뉴욕주를 여행했으며 뉴욕주의 여행 경보를 준수하지 못했습니까?
 - 2021 년 4 월 1 일부터 뉴욕주의 여행 정보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들은 더 이상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영토로부터 뉴욕으로 이동 후 격리 조치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연방 CDC 의 요건은 유효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 공연자/연기자 및 관객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검사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직원 및 행사 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선별 모범 관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선별 검사에 실패했을 경우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권 행사의 관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는 증상이나 양성 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 19 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개인과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의 다른 일행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선별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통과한 개인을 확인합니다.
 - 공간 및 건물 구성이 허용한다면, 코로나 19 의심이나 확진 사례의 경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입구 또는 근처에서 개인을 선별합니다.

- 개인이 선별 검사 및/또는 장소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 및 행사 인력이 감염 가능성이 있으며 시설에 입장하는 개인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고용주가 확인하였으며 CDC, DOH 및 OSHA 절차를 숙지한 개인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고글 및/또는 안면 가리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검사 질문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코로나 19에 대해 양성 진단 검사 결과를 받은 모든 관객, 지난 10일 동안 해당 관객과 밀접한 접촉을 한 관객 당사자의 모든 일행(예: 가족 구성원, 같은 거주지를 공유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권 공연/행사 시설에 대한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 선별 검사 설문지를 통과하지 못해서 또는 양성 진단 검사 결과를 받아 입장이 거부된 고객은 해당하는 경우 평가와 진단 검사를 위해 의료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검사 설문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코로나 19에 대해 양성 진단 검사 결과를 받은 공연자/연기자 또는 직원의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연자/연기자 또는 직원은 해당하는 경우 평가와 진단 검사를 위해 의료 기관에 연락하는 지침과 함께 집이나 지정된 숙소로 보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연자/연기자 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가 확인된 후 또는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 및 공연자/연기자가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경우 프로토콜 및 정책에 대해 DOH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직원, 행사 인력 및 공연자/연기자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해당 개인이 이후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연락할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장소에 대해 식별된 연락 지점은 의심되거나 확진 사례의 개인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현장 안전 감시자와 협의하여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통지, 통신, 접촉 추적,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 및 지침을 모두 계속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 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현재 또는 최근에 장소를 방문한 개인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 19 확진 사례에 대해 통지할 경우 현장 안전 감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모든 확진 판정 사례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격리가 필요할 수 있는 밀접 또는 근접 접촉자를 식별하기 위한 연락처 추적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접촉 추적이 수행되며, 밀접 접촉이 통보되며, 노출된 구역의 추가 청소 및 소독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장소의 확진 사례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알려진 개인에게 알립니다.
 - 위의 절차에 따라 노출된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위해 적절한 직원 또는 인력을 파견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 개인 보호 장비 또는 비접촉식 수단을 통해 수행된 배달 및 책임 당사자가 별도로 참석을 관리할 관객을 제외한 시설에서 다른 개인과 가까운 또는 밀접 접촉을 한 공연자/연기자 및 직원 등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록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접촉자를 확인,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B. 추적 및 조사

- 책임 당사자는 현재 또는 최근에 시설에 머무른 개인이 코로나 19 양성 검사 결과를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개인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거나 진단 검사를 위해 샘플을 수집하기 전(둘 중 더 이른 시점) 48 시간 이내에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같은 구역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는 장소에서 개인을 식별함으로써 주 및 지역 보건부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적 노력에는 주차 정보, 선별 검사 기록 및 공용 구역의 비디오 영상(예: 입구/출구, 로비) 등과 같이 공연/행사 전 또는 그중에 확보한 정보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연자/연기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공연자/연기자 또는 직원이 양성 진단 검사 결과를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접촉 추적이 완료되고 감염된 사람과 노출된 사람의 격리가 수행될 때까지 리허설이나 공연/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에 있다가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공연자/연기자 또는 직원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 사람 또는 밀접 접촉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해당 유증상자의 시설 내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유증상자가 진단 검사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감염 및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고 격리 조치 등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했다는 경고를 받고 추적 조사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공연자/연기자 및 직원은 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모든 발권 행사에서, 책임 당사자는 참석한 각 관객(또는 관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일행/가무원/가족의 성인)에게 잠재적인 접촉 추적 노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를 공연/행사 도착 전이나 직후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해당 관객 정보에는 특정 공연/행사 시설에서의 좌석 배정 내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락처 정보 수집 절차는 책임 당사자가 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정한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입장권 구매 시점, 디지털 신청서 또는 서면 양식을 통해, 참석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에서 지정한 검사/실험실 제공자를 통해 또는 입장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 책임 당사자는 상술한 등록 데이터 기록을 최소 28 일 동안 보관하고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최근의 음성 진단 검사 결과 또는 코로나 19 예방 접종 증거를 개별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공연자/연기자 및 직원을 위해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 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 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 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